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8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 강선영·성일종·박준태

임종득 • 강승규 • 최수진

고동진 • 이만희 • 김상훈

유용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자원·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·물자 또는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,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 중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.

그런데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가 적어 평소 비상사태를 준비하고,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 및 제31조

의2).

법률 제 호

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기관은"을 "기관 및 업체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중점관리대상업체를"을 "중점관리대상업체 중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중점관리대상업체로서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업체
-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1조의2 중 "제12조의2제3항을"을 "제12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2조의2(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| 제12조의2(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) ① ----기 임명 등) ① 다음 각 호의 기 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 관 및 업체는-----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 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4. 중점관리대상업체로서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 인 업체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 (2) -------중점관리대상업체 중 제1항 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체를-----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. ③ ~ ⑤ (생 략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 <신 설>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상대 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⑥ (생략) 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
제31조의2(벌칙) <u>제12조의2제3항</u>	제31조의2(벌칙) <u>제12조의2제1항</u>
<u>을</u>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	제4호 또는 제2항을
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은 1천	
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<u>.</u>